

#### [서식 예] 폭행가혹행위죄

# 고 소 장

고소인 0 0 0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피고소인 △ △ △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### 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고 소 사 실

- 1. 피고소인은 ○○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인 자이고, 고소인은 ○○경찰서 관할 구역 내 야채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.
- 2. 20○○년 ○월 ○일경 오후 ○○시경 ○○시장 내에서 고소인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○○시장 내 주변 상인인 고소 외 □□□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, 마침 순찰중인 ○○경찰서 소속 피고소인을 포함한 경찰관 2인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.
- 3. 고소인은 20〇〇. 〇. 〇. 오후 〇〇시까지 조사를 받고,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, 고소인이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하자, 피고소인이 갑자기 유치장 안에 있던고소인을 끌어내더니 복부와 허벅지를 구타하고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.



4. 고소인은 다음날 풀려났지만 그 날의 폭행으로 육체적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바, 위 피고소인의 행위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일반 시민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폭행·가혹 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 증 방 법

- 1. 진술서
- 2. 진단서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125조
범죄성립 요 건	재판, 검찰,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 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		
형 량	・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<ul> <li>(항고)</li> <li>・근거: 검찰청법 10조</li> <li>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</li> <li>(재정신청)</li> <li>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</li> <li>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</li> <li>(헌법소원)</li> <li>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</li> <li>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</li> </ul>		

### ※ (1) 고소권자

### 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 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



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